



의 안 번 호	제 89호
회 의 연 월 일	2020. 9. 7. (제445회 정기회의)

심의
·
의결
사항
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(행정안전부령)

제 출 부 서	경 찰 청 (경무인사기획관실)
제출연월일	2020. 9. 7.

교육운영계장, 교육정책담당관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장훈련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별표 1)

2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, 별첨
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3호나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고 :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장훈련 점수의 처리는 경찰청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
2. 교육, 파견, 출장 등 특별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
3. 직장훈련 시 부정행위자가 발생한 경우

별표 1 제4호나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고 :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장훈련 점수의 처리는 경찰청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
2. 교육, 파견, 출장 등 특별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
3. 직장훈련 시 부정행위자가 발생한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정책담당관	
연 락 처	02-3150-0926